

	<h2 style="margin: 0;">장학사정관 제도 운영 지침</h2>		규정번호		3-4-21	
			제정일자		2013.03.01	
	개정일자		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1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교내외 장학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해 장학사정관 제도를 두며,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통하여 가정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한 학생 친화적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

제2조(기본방침)

- 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 운영
- ②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운영 지침 준용
- ③ 장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제공 및 상담에 활용
- ④ 주요 업무는 국가장학금 2유형 정보 제공 및 상담, 경제 사정 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 정보 제공 및 상담, 경제 사정 곤란 학생에 대한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

제3조(장학사정관 운영)

- ① 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 운영 지침에 의해 장학사정관을 두며, 취업 및 학생 지원팀에서 1명을 배정함
- ②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함
- ③ 변화하는 장학제도에 맞춰 장학시스템을 구축하고, 최신 정보를 안내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
- ④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정보 안내, 상담 및 선발
- ⑤ 경제사정 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 정보 안내, 상담 및 선발
- ⑥ 경제사정 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 통계 작업

제4조(정보제공 및 상담 대상) ① 경제사정이 곤란한 신입생 및 재학생(복학생 포함)

제5조(성적기준 및 선발기준)

- ①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준용
- 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준용
- ③ 경제 사정 곤란 학생에 대한 사항은 장학규칙을 준용

제6조(장학금 지급기준)

- ①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
- ② 수업료 범위 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중복 수혜 가능
- ③ 이중수혜, 선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규칙 및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준용

부 칙

(1) (시행일)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